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10.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 265호로 2020년 10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부금품 접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명 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부자의 범위 명확화 (안 제2조)
- 다.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과반수 참여 및 위원구성 편중 방지 명문화 (안 제6조)
- 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의무화 및 서면심의 원칙적 금지 조항 신설 (안 제8조)
- 마. 위원회 심의절차 명시 및 심의 이전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전점검·점검결과 첨부 규정 신설 (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2020. 9. 10. ~ 10. 5.):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기부의 세부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 기부자 등을 정의한 것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규정에 따른 것임.
- 안 제4조에서는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 명단 부착, 구 주관 각종 행사 초청, 표창장·감사장 등 수여,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 이용 편의제공과 같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영등포구로 기탁되는 기부금의 지정 용도는 주로 장학기금이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비 마스크 등 물품기부가 많았으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 구 청사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예정임.

※ 영등포구 기탁금품 접수 내역

(단위:천원)

| 연도   | 건수 | 기탁금품    | 지정용도                            |
|------|----|---------|---------------------------------|
| 2020 | 17 | 219,007 | 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장학기금, 재활용 활성화사업 등 |
| 2019 | 12 | 446,870 | 장학기금, 청소년 복지 증진, 어르신 복지향상 사업 등  |

- 안 제5조의 기부심사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근거한 규정이며,
-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위원의 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이나 위촉 등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는 규정임.
- 안 제9조는 기부금품의 기탁 및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담당자가 구체적인 협찬 경위,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행위여부나 직무관련성 여부 등 접수 관련 고려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해충돌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였고, 지정기탁서 및 심의요구서, 심의결과서 등 5종의 양식을 별지에 지정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조례로 체계화하여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 것으로 입법체계나 자구에 특별히 저촉됨이 없음.

또한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해 온 기부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우로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 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